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수요 추계에 관한 연구

장창수 · 최미영

연구책임

- 장창수 /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최미영 / 중부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겸임교수

정책연구 2017- 12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적정규모
수요추계에 관한 연구**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7년 7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45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영창당인쇄사 TEL 042-626-7888 FAX 042-626-988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자치특별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음.
- 이러한 제도는 노인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고용창출 효과도 있었음.
- 그러나 정부는 2008년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 예측 없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로 과다하게 확대 설치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과잉배출을 가져와 수급불균형이 초래되었음.
- 수요에 비해 과다한 인력양성은 전문인력이 사장되거나, 교육기관 간의 과다한 경쟁은 피교육자의 느슨한 교육요구를 수행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됨.
-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08년 37개소가 설치되었고, 2009년 46개소에서 2010년 4월부터 지정제로 변경된 후에도 44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이후 교육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많은 교육기관들이 폐업을 한 상태임.
- 2014년 이후부터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2016년 말 현재 1개소가 휴지상태에 있고, 그 중에서 6-7군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운영상 어려움 호소 및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됨.
- 본 연구는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를 산출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유지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따라서 대전시의 노인인구 추이 및 요양신청 및 판정자, 그리고 인정자 추계,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요 추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수요 예측을 통하여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방법 및 활용도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
-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수요 예측으로 대전시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보험 이용실태 파악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예측.
-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수요 예측을 통하여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효율적인 수요와 공급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전 국민이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임.
-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함.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 지금까지의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래 요양보호사 수요 및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대전시 장래 요양보호사 수요 및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구 분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공급	교육기관(개소)	37	44	22	20	18	17
	요양보호사(명)	16,815	15,076	3,159	3,000	2,600	2500
	요양보호사 배출인원 누계(명)	16,815	49,228	64,767	71,767	79,767	87,267
수요	노인인구(천명)	140	129	165	201	264	326
	인정자(명)	6,400	8,203	13,692	20,502	32,208	44,988
	요양보호사 근무 인원(명)	4,224	9,662	11,648	17,426	27,376	38,239
수요 대 공급 비율		1 : 4	1 : 5	1 : 6	1 : 4	1 : 3	1 : 2.3

주)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장래 수요예측이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 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활용방안이 강구된다면 장래 교육기관 적정규모 축소는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음.

- 공급측면에서 교육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 37개소에서 2010년 44개소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교육기관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고, 자격시험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받아 교육생이 대폭 감소하여 2015년 22개소로 감소되었음.
- 장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는 2020년 20개소로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다가 2025년 18개소로, 2030년 17개소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
- 요양보호사 배출현황은 2015년 현재 3,159명에서 해마다 약간씩 줄어 2020년 3,000명, 2025년 2600명, 2030년 2500명 수준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수요측면에서 대전시의 노인인구는 2015년 165,000명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요양 인정자 수도 2015년 13,692명에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측면에서도 2008년 4,224명에서 2015년에 11,648명과 2020년 17,426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2008년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은 1대 4에서 2015년 1대 6으로 요양보호사가 과잉 배출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020년 1대 4에서 2025년 1대 3, 2030년 1대 2.3 정도로 적정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정책제언

- 앞에서 대전시 노인인구 추계 및 연도별 요양보호사 수요추계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요양보호사 수요 대비 교육기관이 다소 과다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거나, 건강보험수가 상승,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개선 및 처우개선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면 교육 신청자가 증가되어 교육기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요와 공급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요구됨.
 - 더불어 대전시에서는 교육기관 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니 교육기관 수 상한제를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질 평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합격률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수준 향상을 위해서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정부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차 례

1장 서론	3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2절 연구방법 및 구성	6
1. 연구방법	6
2. 보고서 구성	6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7
2장 이론적 고찰	11
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1
1. 도입배경	11
2. 목적 및 적용대상	13
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과정	14
4.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관리 운영체계	19
2절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이해	21
1.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의 개요	21
2.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24
3.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교육기관의 문제점	27
3절 장기요양 이용 및 요양보호사 현황	31
1.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	31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32
3.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현황	35

3장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실태 분석	45
1절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이용 실태	45
1.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	45
2.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49
3. 대전시 자격별 판정 현황	51
4. 대전시 장기요양 인정 현황	53
2절 대전시 장기요양기관 및 전문인력 현황	56
1. 장기요양기관 현황	56
2. 장기요양 전문인력 현황	57
3절 대전시 요양보호사 및 교육기관 현황	59
1. 대전시 요양보호사 양성 현황	59
2.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60
4장 대전시 요양보호사 관련 수요 추계	65
1절 적용인구 및 요양인정 추계	65
1. 대전시 장기요양 적용인구 추계	65
2.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요양인정 추계	67
2절 대전시 요양보호사 양성 및 수요 추계	70
1. 대전시 요양보호사 양성 추계	70
2. 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및 수요 추계	73
3절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수요추계	78
1.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별 배출현황	78
2.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수요추계	81
제5장 결 론	87
제1절 요약	87
1. 대전시 요양보호사 양성 현황	87
2.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88
제2절 정책제언	90
참고문헌	95

표 차례

[표 2-1] 우리나라 장래 노인인구 및 구성비	13
[표 2-2]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수급 대상	14
[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단계	15
[표 2-4]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판정기준	16
[표 2-5] 장기요양 재가 급여 유형	18
[표 2-6]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	31
[표 2-7] 연도별 장기요양 신청 현황	32
[표 2-8] 연도별 장기요양 판정 및 인정 현황	33
[표 2-9] 등급별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전국)	34
[표 2-10] 연도별 장기요양 인정 현황(전국)	35
[표 2-11] 장기요양기관 현황(2008-2015)	36
[표 2-12] 우리나라 장기요양 전문인력 현황	38
[표 2-13] 지역별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 (2016년 12월 현재)	39
[표 2-14] 연령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40
[표 2-15] 연령별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41
[표 2-16] 연령별 시설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41
[표 3-1] 대전시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	45
[표 3-2] 대전시 자치구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47
[표 3-3] 대전시 자치구별, 연령별 노인인구 현황	48
[표 3-4] 대전시 자격별 신청 현황	49
[표 3-5] 대전시 자치구별 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50
[표 3-6] 대전시 등급·연령별 판정현황	51
[표 3-7] 대전시 자격별 판정 현황	52
[표 3-8] 대전시 자치구·등급별 인정자 현황	53
[표 3-9]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54

[표 3-10] 대전시 등급·인정신청 구분별 인정현황	54
[표 3-11] 대전시 등급·자격별 주거상태 현황 (전체)	55
[표 3-12] 대전시 자치구별 기관수 및 정원 현황	56
[표 3-13] 대전시 연도·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08~2015)	57
[표 3-14] 대전시 자치구별 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58
[표 3-15]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양성 현황	59
[표 3-16]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현황	60
[표 3-17]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61
[표 3-18]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61
[표 4-1] 대전시 연도별 노인인구 및 구성비	65
[표 4-2] 연도별 장기요양 적용인구 추계	66
[표 4-3] 연도별 장기요양 신청 및 요양인정 추이(2008~2016)	67
[표 4-4] 연도별 장기요양 신청 및 요양인정 추계(2017~2030)	69
[표 4-5]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배출 현황	70
[표 4-6] 대전시 연도·연령대별 배출현황	71
[표 4-7] 대전시 연령대·성별 요양보호사 배출 누적 현황(2008~2016)	72
[표 4-8]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합격자 추계	72
[표 4-9]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	73
[표 4-10] 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현황(2009~2016)	74
[표 4-11] 대전시 연령대·성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2008~2016)	75
[표 4-12]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2017~2030)	77
[표 4-13] 대전시 교육기관별 요양보호사 배출현황(2013~2014)	78
[표 4-14] 대전시 교육기관별 요양보호사 배출현황(2015~2016)	79
[표 4-15]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현황	81
[표 4-16]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82
[표 4-17] 대전시 장래 요양보호사 수요 및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83
[표 5-1] 대전시 장래 요양보호사 수요 및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88

그림 차례

[그림 2-1] 장기요양인정 절차도	17
[그림 2-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및 운영체계	20
[그림 4-1] 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2009~2016)	75

1장

서론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장 서론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 3월 현재 노인인구의 비율이 14%에 근접하여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2025년에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최미영 외, 2016, 2017).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의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음.
- 이러한 제도는 노인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 또한 가족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필요하므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고용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정부는 2008년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 예측이 없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로 과다하게 확대 설치함으로써 수급불균형이 나타났음.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은 제도시행 초기인 2008년에는 학력이나 연령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일정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음.

- 박명선 외(2009)에 의하면 2009년 전국 1,078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약 50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여, 2009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약 44,800명에 비해 10배 이상 많이 배출되었음.
 - 수요에 비해 과다한 인력양성으로 전문 인력이 사장되고, 교육기관 간의 과다경쟁은 피교육자의 느슨한 교육요구를 야기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됨.
-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확대되어 2010년까지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약 5만 여명이었고, 2016년 말까지 약 7만 여명이 배출되었음.
 - 그러나 2016년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12,134명으로 수요에 비해 배출된 인원이 약 6배 정도로 과다 배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18,785명으로 6년 동안 2만 명 미만으로 나타남.
 - 그동안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수요 감소로 교육기관 폐업 등으로 많이 감소했지만, 2017년 현재 22개소로 아직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과다 설치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육기관이 다수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 신규 설치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08년 37개소가 설치되었고, 2009년 46개소에서 2010년 4월부터 지정제로 변경된 후에도 44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이후 교육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많은 교육기관들이 폐업을 한 상태임.
- 2014년 이후부터 2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016년 말 현재 1개소가 휴지상태에 있는데다가 6-7군데를 제외하고는 남은 교육기관도 운영상 어려움 및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됨.

- 본 연구는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를 산출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유지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그동안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시설, 인력 추계에 대한 연구(최인덕 외, 2010)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시에 따른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 예측(박명선 외, 2010) 등의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적정규모 추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그리하여 대전시의 노인인구 추이 및 요양신청 및 판정자, 그리고 인정자 추계,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요 추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따라서 중장기 요양보호사 수요 예측을 통하여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한 선행연구 고찰
-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수요 예측
- 대전시 노인인구 및 요양보호 등급인원, 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인구 수요 예측
-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요양보호사 근무자 현황, 변화 추이
- 대전지역 연도별 요양보호사 교육생 및 자격증 취득자 현황 조사
- 노인교육기관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등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 교육기관의 대전 지역별 분포 조사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은 시에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분포,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제3항)

2. 보고서 구성

-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총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 구성을 제시하였음.
-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과정 및 관리운영체계를 제시하였고,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제도와 장기요양 이용 및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음.
- 제3장에서는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과 장기요양기관 및 전문인력 현황, 그리고 대전시 요양보호사 현황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음.

- 제4장에서는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요 추계를 위해 적용인구 및 요양인정과 요양보호사 배출 및 근무현황, 그리고 교육기관 적정 규모 수요 추계에 대해 분석하였음.
- 제5장에서는 결론부문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고, 결론 및 한계점과 후속연구 제언을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중장기 요양보호사 수요 예측 및 교육기관 적정규모 수요 예측에 활용.
-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등,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대전시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 정책수립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
- 중장기 요양보호사 수요 예측을 통하여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함.

2장

이론적 고찰

- 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2절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이해
- 3절 장기요양 이용 및 요양보호사 현황

2장 이론적 고찰

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 도입배경

-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로 2017년 3월 현재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목전에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1999년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1999년 10월 대한노인회장, 일부 대학교수를 포함한 노인복지전문가들이 대통령에게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보고’에서 2000년도 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연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남기민, 2016).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용하고 1999년 12월에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연구단을 발족하였고, 2000년 1월 그 명칭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으로 변경하고, 이 문제를 검토하여 2000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방안’을 발표함(남기민, 2016).
- 이러한 연구활동과 함께 정부에서는 2000년 7월 건강보험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재정 파탄이라는 위기적 상황 하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을 2001년 5월 31일에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제시됨(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남기민, 2016).

- 2002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었고, 2002년 대통령선거 때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었으며, 2003년 초 참여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를 실시하는 방침을 정하고, 2003년 3월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을 자문기구로 설치함(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 2004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과 시범사업모형 등을 만들기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05년 7월부터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 1차 시범사업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3월 1일까지로 6개 시군구(광주남구, 강릉, 수원, 부연, 안동, 북제주)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 2차 시범사업은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4월 1일까지로 2개 시군구(부산북구, 전남완도)가 추가되어 실시되었으며, 3차 시범사업은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6월 1일까지 5개 시군구(인천부평구, 대구남구, 청주, 익산, 하동)가 추가되어 총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5년 10월 입법예고를 하고, 2006년 2월 정부입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4월 17일)을 거쳐 4월 27일 공포, 2007년 6월 8일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완료됨(남기민, 2016).
- 이어 2007년 10월 1일부터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었고,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음(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2. 목적 및 적용대상

1)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2) 적용 대상

-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5년에 65만 4천명에서 2030년이면 129만 6천명으로 지금의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즉,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2.8%에서 2020년 15.6%, 2030년 24.5%, 2040년에는 32.8%로 증가할 전망이다.
 - 우리사회는 2025년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더욱 가파른 노인인구 증가추이가 예측됨.

[표 2-1] 우리나라 장래 노인인구 및 구성비

(단위 : 만명, %)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총인구	5,101	5,197	5,261	5,294	5,283	5,220
노인인구	65+	654	813	1,051	1,296	1,518
	75+	266	348	427	532	708
	85+	51	78	114	147	233
비율	12.8	15.6	20.0	24.5	28.7	32.8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전 국민이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
- 장기요양 급여 이용가능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으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인정 판정을 받은 자가 되며, 이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음(장기요양통계연보, 2015).

[표 2-2]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수급 대상

구 분	적용 대상자 범위
적용 대상	전 국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보험과 동일),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 부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대한 개별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 체계로 산정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장기 요양급여 이용 가능자 (수급자)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과정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단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은 <표 2-3>과 같이 5단계로 이루어짐.

[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단계

구 분	이용 체계
1단계 (인정 신청)	-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단계 (등급 판정)	-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1~5등급) - 공단 직원이 조사한 인정 조사결과 및 의사소견서 등 참고 하여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
3단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및 송부 - 수급자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고려,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며, 장기 요양급여 계약체결하고 수 급자 가정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받 을 수 있음
4단계 (비용 청구 및 지급)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 - 공단 부담금 지급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대상 금액 제외)
5단계 (이용 지원)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일반사항,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안 내하고 장기요양기관 정보 제공 등 수급자를 위한 이용지 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1) 인정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 및 Fax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함.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진단서), 본인이나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2) 등급 판정 및 결과 통보

-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조사
 - 공단 직원은 노인장기요양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연구된 조사표(장기요양인정 조사표)를 토대로 신청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함.
-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판정기준은 <표 2-4>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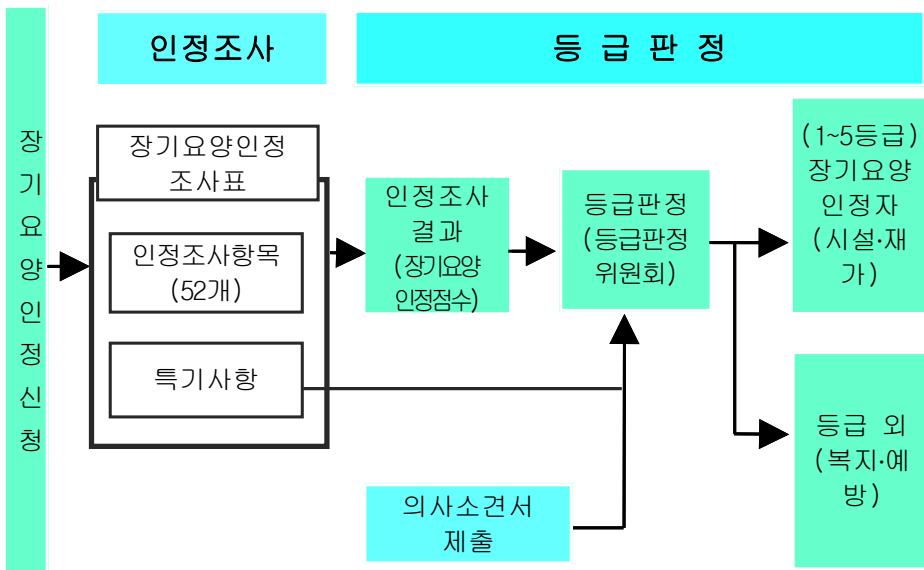
[표 2-4]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판 정 기 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75점 이상 ~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60점 이상 ~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51점 이상 ~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45점 이상 ~ 51점 미만인 자)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등급 판정)하며,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
 -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별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함.

- 장기요양인정 등을 통보하기 위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이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¹⁾’를 개별 통지함.
-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아래 [그림 2-1]과 같음.



[그림 2-1] 장기요양인정 절차도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3) 노인장기요양 급여 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 ①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가 있음.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하여 작성한 장기요양 적정급여 이용계획서를 말함(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유형은 <표 2-5>와 같음.

[표 2-5] 장기요양 재가 급여 유형

종 류	내 용
방문 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 지원(남기민, 2016)
방문 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남기민, 2016)
방문 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단기 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기타 재가 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 생활·신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또는 가정을 방문,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남기민, 2016)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 ②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함(남기민, 2016).
- ③ 특별현금급여 : 가족 등으로부터 수급자가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인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음(남기민,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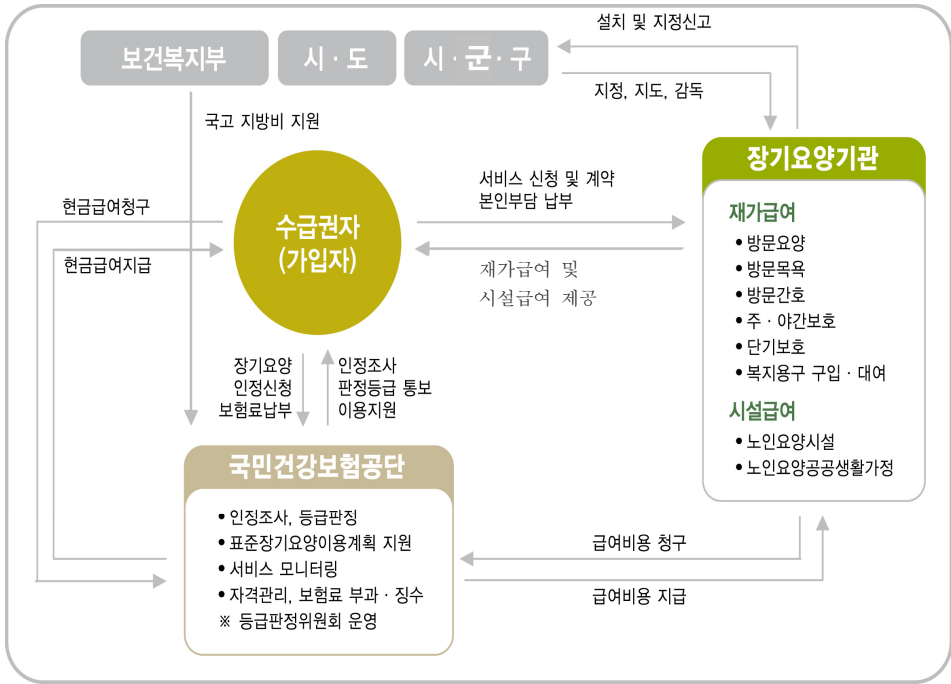
4.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관리 운영체계

1)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사업 관장
-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와 재정 운영
- 신청인에 대한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확인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 그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



[그림 2-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및 운영체계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3)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제공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 및 지정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공단에 청구

4) 지방자치단체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권한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 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이루어짐.

2절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이해

1.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의 개요

1) 요양보호사의 개념 및 업무내용

-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 일상 생활수행이 곤란한 노인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장기요양기관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군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중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많은 서비스를 담당함.
 - 요양보호사 업무내용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함.
 -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재가급여 서비스와 시설급여 서비스가 있으며,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배치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배치 가능.
 - 재가급여 서비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이 있음.
- ①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③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 ④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2)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과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및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됨.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이에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3) 요양보호사 양성제도의 의의

- 1960년대부터 진행된 산업화로 말미암아 우리사회는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의 변화,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변화, 식생활 개선 및 보건위생환경 증진, 의과학의 발달로 인한 노인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 기조의 전반적 확산 등의 변화를 가져왔음.
-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의 곤란은 타인의 간병 및 수발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노인요양보장체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여 2001년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2년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보고서 작성 등 공론화 과정 거침.
- 노인요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2006년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대안 법안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을 돌보는 계기를 만들었음.
- 2007년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음(김영태, 김희웅, 정문호, 2010). 이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보장차원의 노인요양보호시대가 열리게 되었음.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법제처, 2016).
- 이러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설과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노인요양에 필요한 가장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 바로 요양보호사임.
-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정신적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현장에서 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필수요원으로서의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2.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의 2 제2항).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제39조의 2 제3항)
-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제39조의 2 제4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2) 자격시험의 실시

- 자격시험은 특별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함.

3) 자격시험 과목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 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 각론 및 특수요양보호 각론을 말함)으로 함.

4)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하며,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함.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의 3 제1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 해당서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와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학습교구 목록 포함),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출처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16).

6)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및 수료기준

○ 교육과정 운영기준

- 실기연습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기관과 실습 연계를 함.
- 현장실습기관은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을 실시하여야 함.

○ 수료기준

- 교육생이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3.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교육기관의 문제점

1)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 지난 2008년 1월 정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양성방안을 법제화하였는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은 학력이나 연령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일정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음.

- 그러나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기간을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특히 요양보호사의 인력관리 문제는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바 있음(김준환, 2008; 장우심, 2009; 이광래, 2009; 문영필, 2009; 김영태, 김희웅, 정문호, 2010; 엄기옥, 2011).
-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아왔으며, 정부도 이에 편승하여 새로운 노인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이라는 타이틀로 포장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음.
- 그 결과, 신중 유망직종으로 인식된 요양보호사 자격은 기존의 노인복지사, 케어복지사, 간병사 등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희망하는 40-50대 가정주부들은 물론 80대 노인들까지도 관심의 대상이었음.
 -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과잉으로 취득하여 자격증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음(김영태, 김희웅, 정문호, 2010).
- 2009년 7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의 교육·자격제도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심재철 의원은 “자격제도와 관련해서 학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없이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업무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 개발체계가 마련되지 못해 전문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이영주(2013)등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문제점등을 제기하였음.
- 2010년 1월 25일 노인복지법의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한 일부개정 및 공포로 인해 4월 26일부터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새로운 자격시험이 실시되었지만, 요양보호사의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2) 요양보호사 양성 및 교육기관의 문제점

- 2009년 6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년 만에 1천 100여 개로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또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과잉공급되어 요양보호사 취업률은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김성훈, 신주화, 하정미, 2010).
- 요양보호사 양성에 있어 다수의 교육기관들에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거나 교육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강사요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과과정의 검증도 없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요양보호사의 수요와 공급체계에도 많은 혼란을 주어 왔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음(김준환, 2008; 김성훈 외, 2010).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관리에 관한 연구로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시설 내 인력관리에 대한 인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시도한 연구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실무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부문에서 교육기관의 난립과 교육기간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불균형을 언급하였음(김영태, 김희웅, 정문호, 2010).
- 조우홍(2009)은 일본 개호복지사의 양성제도와 한국의 요양보호사와의 제도 비교를 통해 발전적 방안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소양교육 및 적절한 보상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김준환(2008)은 신규인력에 대한 보다 강화된 교육과 자격시험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평준화 및 표준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연수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이와 더불어 우수인력을 유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높은 임금 등의 좋은 일자리의 조건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음.

- 장우심(2009)은 요양보호사의 자격강화를 위하여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광역 별 수준의 평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김성훈과 신주하, 하정미(2009)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강사들에 대해서는 현재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 경력이면 강사가 가능한데, 실제 강의에서는 교육내용 별로 다른 자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즉, 느슨한 강사기준으로 인해 실무와 동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학생측면에서는 현재의 교육수준으로는 충분한 케어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지속적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음(김영태, 김희웅, 정문호, 2010).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경우 일정 시설과 최소의 교수인력을 갖추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여 대전시의 경우 2008년 12월 말 현재 40개소(신고시설 37개소)가 개설되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1월 현재 약 6만 5천 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음.
-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08년 설치제에서 37개소가 개설되어 16,800여 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시켰고, 2010년 4월부터 지정제로 변경된 후에도 여전히 16개소가 개업을 하고, 18개소가 폐업을 하여 2010년 44개소가 설치·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1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요양보호사 수강생의 감소로 교육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많은 교육기관이 폐업을 하였고,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6개소로 감소되었음.
 - 그 이후 2014년에는 22개 교육기관이 운영되었고, 2017년 3월 현재 20개소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 조차도 경영상 어려움에 허덕이며 교육의 부실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3절 장기요양 이용 및 요양보호사 현황

1.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각 연도별 우리나라 의료보장 적용인구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은 <표 2-6>과 같음.

[표 2-6]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 구	50,001	50,291	50,581	50,909	51,169	51,448	51,757	52,034	
건 강 보 험	소계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49,989	50,316	50,490
	직장	30,417	31,413	32,384	33,257	34,106	35,006	35,602	36,225
	지역	17,743	17,201	16,523	16,043	15,556	14,984	14,715	14,265
의료급여 ²⁾	325	124	133	148	131	125	122	118	
기초수급 ³⁾	1,517	1,553	1,542	1,461	1,376	1,334	1,318	1,425	
노인인구 비율(%)	10.2	10.5	10.8	11.1	11.6	12.0	12.5	12.9	
65 세 이 상	의료 보장	5,086	5,286	5,449	5,645	5,922	6,193	6,463	6,719
	건강 보험	4,600	4,826	4,979	5,184	5,468	5,740	6,005	6,222
	의료 급여	80	47	48	50	47	46	45	44
	기초 수급	407	413	422	410	407	407	413	451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별).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말함.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 1, 2종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포함)를 말함.

-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03만 명으로 이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 명이며, 의료급여 12만 명, 기초수급 적용은 143만 명 정도임.
- 한편, 2015년 말 현재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는 672만 명으로, 이 중 건강보험 622만 명이고, 의료급여 4만 명, 그리고 기초수급 대상 4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2008년 10.2%에서 2011년 11.1%로 0.3%p씩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는 0.4~0.5%p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 201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는 <표 2-7>과 같이 78만 9천 명임.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살펴본 결과,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7대 3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7] 연도별 장기요양 신청 현황

(단위 : 천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노인인구 (65세이상)		5,086	5,286	5,449	5,645	5,922	6,193	6,463	6,719
신청자		356	522	622	617	643	686	737	789
성별	남	99 (27.8%)	148 (28.4%)	176 (28.3%)	168 (27.2%)	173 (26.9%)	184 (26.8%)	197 (26.7%)	211 (26.7%)
	여	257 (72.2%)	374 (71.6%)	446 (71.7%)	449 (72.8%)	470 (73.1%)	502 (73.2%)	540 (73.%)	578 (73.3%)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각 연도별).

2) 장기요양 판정 및 인정 현황

(1) 연도별 장기요양 판정 및 인정 현황

○ 연도별 장기요양 판정 및 인정 현황은 <표 2-9>와 같이 2015년 인정자는 46만 8천명(노인인구의 7.0%)이며, 인정율은 74.2%임.

-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8년 4.2%에서 2015년 7.0% 수준으로 증가 추세이며, 판정 대비 인정률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80%대를 형성하다가 2011년 67.8%에서 2015년 74.2%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

[표 2-8] 연도별 장기요양 판정 및 인정 현황

(단위 : 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노인인구 (65세이상)	5,086	5,286	5,449	5,645	5,922	6,193	6,463	6,719
판정자	265	322	337	478	495	535	585	631
남	74	92	96	131	134	144	156	169
여	191	230	241	347	361	391	429	462
인정자	214	258	270	324	342	378	424	468
남	61	76	78	93	96	105	116	128
여	153	182	192	231	246	273	308	340
(판정 대비 인정률)	80.8%	80.2%	80.1%	67.8%	69.0%	70.7%	72.5%	74.2%
요양보호사 (재가 시설)	114 97 17	334 309 25	455 420 35	233 197 40	233 193 45	253 207 51	267 216 56	295 241 60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4.2%	4.9%	5.0%	5.7%	5.8%	6.1%	6.6%	7.0%

주1) 각 연도말 자격 기준 신청자 현황(각 연도말 기준 사망자 제외),

주2) 요양보호사 현황 2008-2010년 계는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사 취득유예 합산한 수치임.

주3) 요양보호사 취득유예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도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경우를 말함.

주4) 요양보호사의 경우 2011년 이후부터 중복제외 된 수치임.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각 연도별).

(2) 등급별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 한편, <표 2-9>와 같이,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등급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467,752명이며, 일반⁴⁾ 303,355명, 경감⁵⁾ 84,446명, 의료급여⁶⁾ 5,675명, 기초수급⁷⁾ 74,276명임.

[표 2-9] 등급별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전국)

(단위 : 명)

구분	2015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정자계	467,752	37,921	71,260	176,336	162,763	19,472
일반	303,355	25,023	46,293	114,805	103,260	13,974
경감	84,446	6,516	13,594	32,694	28,624	3,018
의료급여	5,675	422	803	2,139	2,074	237
기초수급	74,276	5,960	10,570	26,698	28,805	2,243

주)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건제외).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 등급별로는 1등급 37,921명, 2등급 71,260명, 3등급 176,336명, 4등급 162,763명, 5등급 19,472명으로 3등급과 4등급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 4) 일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1항과 제13조에 의거하여 신청자 중 경감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 5)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3항에 의거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자를 말함.
- 6)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말함.
- 7) 기초수급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 1종과 2종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포함)를 말함.

(3) 연도별 장기요양 인정 현황

- 연도별 장기요양 인정현황은 <표 2-10>과 같이 2008년 21만 4,480명에서 2015년 46만 7,752명에 달하며, 장기요양 인정자는 2008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2-10] 연도별 장기요양 인정 현황(전국)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정자계	214,480	258,476	270,320	324,412	341,788	378,493	424,572	467,752
일반	156,776	184,920	196,846	236,523	249,963	250,117	278,938	303,355
경감	544	18,696	20,092	26,958	30,113	62,690	74,207	84,446
의료급여	6,247	3,281	3,465	4,281	4,302	4,592	5,190	5,675
기초수급	50,913	51,579	49,917	56,650	57,410	61,094	66,237	74,276

주)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건 제외).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3.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현황

1)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수는 <표 2-11>과 같이 2008년 말 현재 8,318개소로 재가요양기관 6,618개소와 시설요양기관 1,700개소였다가 2009년 말 현재 14,560개소임
 - 재가요양기관 11,931개소와 시설요양기관 2,629개소로 2008년 대비 6,242개소(75.0%)가 급증하였음.
- 2010년에는 재가요양기관이 11,228개소로 다소 감소하였고, 시설요양기관은 1,122개소(42.7%) 증가하여 3,751개소였으나, 장기요양기관은 총 14,979개소로 2009년도 대비 소폭(419개소, 2.9%) 증가추이를 보임.

- 2011년 말 현재 재가요양기관이 10,857개소로 2010년 대비 371개소가 감소하였고, 시설요양기관은 310개소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14,918개소로 2010년 대비 0.4%p 감소하였음.
- 한편, 2008년도 말에서 2011년도 말 현재 대전시의 장기요양기관 수는 전국 6대 광역도시 중 가장 낮은 시설분포 현황을 보임.

[표 2-11] 장기요양기관 현황(2008-2015)

(단위 : 개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전국	6,618	1,700	11,931	2,629	11,228	3,751	10,857	4,061
계	8,318		14,560		14,979		14,918	
증감(%)	-		6,242(75.0)		419(2.9)		-61(-0.4)	
서울	944	123	1,738	265	1,809	418	1,828	439
부산	511	71	914	106	829	158	748	143
대구	364	41	644	68	601	135	569	177
인천	277	71	591	131	545	206	552	229
광주	267	46	430	58	462	91	434	95
대전	225	40	459	61	439	88	405	94
	265		520		527		499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전국	10,730	4,326	11,056	4,648	11,672	4,871	12,917	5,085
계	15,056		15,704		16,543		18,002	
증감(%)	138(0.9)		648(4.3)		839(5.3)		1,459(8.8)	
서울	1,809	476	1,913	521	2,047	539	2,254	553
부산	728	145	712	134	741	122	802	121
대구	576	203	601	251	622	252	678	261
인천	561	247	609	282	641	305	732	338
광주	416	96	418	100	426	105	467	107
대전	395	104	421	102	449	113	502	115
	499		523		562		617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각 연도별). 주) 각 연도말 기준, 지정 운영 기관 수.

- 2012년 말 현재 재가요양기관은 10,730개소로 2011년 대비 127개소가 감소하였고, 시설요양기관은 265개소 증가하여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2011년과 비슷한 15,056개소임.
- 그러나 2013년 말 현재 재가요양기관은 11,056개소에서 2015년 말 현재 12,917개소로 2013년 대비 1,861개소(16.8%)가 증가함.
- 2015년 말 현재 재가요양기관 수는 12,917개소이고, 시설요양기관 수는 5,085개소로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18,002개소로 2014년 대비 1,245개소(8.8%)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전국 6대 광역도시 중 대전시의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2012년까지 6위 수준이었다가 2013년부터는 광주광역시보다 더 많은 기관 현황을 보여 2015년 말 현재 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2) 우리나라 장기요양 전문인력 현황

- 우리나라 장기요양 전문인력은 <표 2-12>와 같이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말 현재 요양보호사는 232,639명에서 2015년 말 현재 294,788명으로 62,149명(26.7%)이 증가하였음.
- 2011년 말 현재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196,784명(83.1%)이고, 시설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9,902명(16.9%)으로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5년 말 현재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41,323명(80.0%)이고, 시설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0,386명(20.0%)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기관의 증가 현상과 함께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도 상당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11년도에 비해 재가요양기관보다는 시설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15년 말 현재, 요양보호사 294,788명, 사회복지사 13,923명, 간호사 2,719명, 간호조무사 9,099명 등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요양보호사 10.6% 증가, 사회복지사 23.2% 증가, 간호사 1.3% 증가, 간호조무사 10.4% 증가하였음.

[표 2-12] 우리나라 장기요양 전문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계	250,863	253,116	274,243	292,889	324,937
	사회복지사	6,133	6,751	7,506	11,298	13,923
	의사(축탁포함)	1,081	1,142	1,233	1,324	1,415
	간호사	2,838	2,735	2,627	2,683	2,719
	간호조무사	5,859	6,560	7,552	8,241	9,099
	치과위생사	7	7	4	5	4
	물리(작업)치료사	1,530	1,626	1,740	1,813	1,952
	요양보호사	232,639	233,459	252,663	266,538	294,788
	영양사	776	835	918	987	1,046
재가	사회복지사	3,224	3,427	3,828	6,623	8,440
	의사(축탁포함)	62	71	83	94	103
	간호사	1,331	1,310	1,262	1,213	1,218
	간호조무사	1,499	1,546	1,838	2,073	2,476
	치과위생사	5	5	4	5	4
	물리(작업)치료사	200	219	213	225	246
	요양보호사	196,784	192,830	206,971	216,358	241,323
	영양사	45	45	48	45	51
시설	사회복지사	3,059	3,459	3,809	4,817	5,634
	의사(축탁포함)	1,038	1,104	1,194	1,288	1,378
	간호사	1,633	1,552	1,498	1,575	1,595
	간호조무사	4,776	5,427	6,190	6,752	7,303
	치과위생사	2	2	-	-	-
	물리(작업)치료사	1,396	1,474	1,593	1,668	1,806
	요양보호사	39,902	45,234	51,449	56,072	60,386
	영양사	740	796	875	944	1,001

주1) 각 직종 내 중복 인원 제거(의사+축탁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주2) 계는 급여종류별 중복 제거.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각연도별)

3) 지역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표 2-13>과 같이, 경기도가 75,4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가 58,416명, 경상북도 20,588명, 부산광역시 19,798명, 인천광역시 19,758명, 경상남도 19,751명 등의 순으로 특별·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더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표 2-13] 지역별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 (2016년 12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노인 인구 (천명)	1,203 12.6%	500 14.7%	311 12.8%	306 10.8%	166 11.2%	164 10.8%	101 8.9%	21 10.5%	1,286 10.7%	
요 양 사	제가	52,560	17,948	11,932	15,760	9,854	10,291	3,544	665	57,856
	시설	5,856	1,850	2,559	3,998	1,186	1,657	583	110	17,566
	계	58,416	19,798	14,491	19,758	11,040	11,948	4,127	775	75,422
노인대비 비율	4.9%	4.0%	4.7%	6.5%	6.7%	7.3%	4.1%	3.7%	5.9%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고	
노인 인구 (천명)	254 16.9%	229 14.8%	331 16.3%	324 17.9%	372 21.1%	468 17.8%	452 13.9%	83 14.1%		
요 양 사	제가	7,755	6,771	11,641	10,843	11,966	16,312	16,353	2,004	-
	시설	3,278	2,831	3,193	2,627	3,003	4,276	3,398	1,317	-
	계	11,033	9,602	14,834	13,470	14,969	20,588	19,751	3,321	-
노인대비 비율	4.3%	4.2%	4.5%	4.2%	4.0%	4.4%	4.4%	4.0%		

주1)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말 현재, 지역별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 비율(%)임.

주2) 요양보호사 계의 비율(%)은 각 지역별 노인인구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임(%)임.

- 대전시의 경우에는 6대 광역 도시 중 가장 낮은 노인인구(164천 명, 10.8%)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대비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은 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노인인구 비율이 비슷한 인천시의 경우보다도 0.8%p 높은 수치이며, 노인인구 수가 비슷한 광주시의 경우보다 0.6%p 높은 수치임.

4) 연령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1) 연령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 201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연령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은 <표 2-14>와 같이, 50대가 152,813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0대가 112,283명(33.6%), 40대 44,654명(13.4%), 70대 15,205명(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4] 연령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계(명)	25	1,361	6,746	44,654	152,813	112,283	15,205	797	333,884
비율(%)	0.0	0.4	2.0	13.4	45.8	33.6	4.6	0.2	10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주) 2016년 11월 현재.

(2) 연령별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 연령별 재가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표 2-15>와 같이, 50대가 119,918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0대가 94,320명(34.5%) 순으로 많이 나타남.

[표 2-15] 연령별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계(명)	17	893	5,690	37,271	119,918	94,320	14,409	788	273,306
비율(%)	0.0	0.3	2.1	13.6	43.9	34.5	5.3	0.3	10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주) 2016년 11월 현재.

(3) 연령별 시설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 요양원, 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연령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에서도 <표 2-16>과 같이, 50대가 32,895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7,963명(29.7%) 순이었음.

[표 2-16] 연령별 시설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계(명)	8	468	1,056	7,383	32,895	17,963	796	9	60,578
비율(%)	0.0	0.8	1.7	12.2	54.3	29.7	1.3	0.0	10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주) 2016년 11월 현재.

3장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실태분석

1절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이용실태

2절 대전시 장기요양기관 및
전문 인력현황

3절 대전시 요양보호사 및 교육기관 현황

3장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실태 분석

1절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이용 실태

1.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

1) 대전시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

○ 대전시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은 <표 3-1>과 같음.

[표 3-1] 대전시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계	1,316,991	85,389	1,352,268	90,529	1,413,050	85,045	1,434,553	90,467
(비율)		(6.5%)		(6.7%)		(6.0%)		(6.3%)
남	660,486	32,663	679,182	34,825	709,396	32,411	721,022	34,896
여	656,505	52,726	673,086	55,704	703,654	52,634	713,531	55,571
	2004		2005		2006		2007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계	1,448,882	96,198	1,461,693	101,044	1,468,376	105,272	1,499,986	134,152
(비율)		(6.6%)		(6.9%)		(7.2%)		(8.9%)
남	728,594	37,591	734,714	39,769	737,050	41,717	750,447	54,746
여	720,288	58,607	726,979	61,275	731,326	63,555	749,539	79,406

	2008		2009		2010		2011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계	1,505,335	139,936	1,510,197	145,614	1,501,467	129,437	1,515,783	134,902
(비율)		(9.3%)		(9.6%)		(8.6%)		(8.9%)
남	752,733	57,399	755,085	59,955	751,565	53,148	758,222	55,757
여	752,602	82,537	755,112	85,659	749,902	76,289	757,561	79,145

	2012		2013		2014		2015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계	1,525,501	142,117	1,534,901	149,716	1,535,330	157,400	1,522,189	164,625
(비율)		(9.3%)		(9.7%)		(10.3%)		(10.8%)
남	762,982	59,285	767,244	63,032	767,146	66,852	760,421	70,391
여	762,519	82,832	767,657	86,684	768,184	90,548	761,768	94,234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각 연도별).

- 대전시는 2006년 현재 105,27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2%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5년 현재 164,625명으로 10.8%의 노인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노인인구 증가율은 2000년 6.5%에서 2006년 7.2%로 6년 동안 0.7%p 증가한 반면, 2006년에서 2012년까지는 9.3%로 6년 동안 2.1%p 증가하여 약 3배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를 보여주고 있음.
- 전체 인구의 성비는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보이나, 노인인구 성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대전시 자치구별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

(1) 대전시 자치구별 적용인구 현황

- 대전시 자치구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은 <표 3-2>와 같음.

[표 3-2] 대전시 자치구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비율,%)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수급
합 계	1,520,979 (100%)	1,470,038	3,295	47,646
동 구	236,732 (15.6%)	223,638	730	12,364
중 구	254,116 (16.7%)	243,424	643	10,049
서 구	491,328 (32.3%)	477,953	919	12,456
유성구	343,049 (22.6%)	337,555	506	4,988
대덕구	195,754 (12.9%)	187,468	497	7,789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6. 주1) 2016년 6월말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2016년 6월 말 현재 대전시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152만여 명이고, 자치구별 적용인구는 서구가 491,328명(32.3%)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343,049명(22.6%), 중구 254,116명(16.7%), 동구 236,732명(15.6%) 순으로 나타났고, 대덕구가 195,754명(12.9%)으로 가장 적었음.
- 건강보험 적용인구에서도 서구가 477,953명으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337,555명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급여도 서구가 919명으로 가장 많았음.
- 그러나 기초수급 현황은 서구와 동구가 12,456명과 12,36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구가 10,049명, 대덕구 7,789명, 유성구 4,988명 순으로 나타남.

(2) 대전시 자치구별, 연령별 노인인구 현황

- 대전시 자치구별, 연령별 노인인구 현황은 <표 3-3>과 같음.

[표 3-3] 대전시 자치구별, 연령별 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노인 (비율,%)	연령별					
			65세 ~69세	70세 ~74세	75세 ~79세	80세 ~84세	85세 ~89세	90세 이상
계	1,514,354	172,486 (11.4%)	58,099	43,755	34,431	21,639	10,067	4,495
자치구별			101,854(59.1%)			70,632(40.9%)		
동구	234,754	35,911 (15.3%)	11,769	9,480	7,363	4,433	1,996	870
중구	252,347	38,674 (15.3%)	12,670	10,061	7,905	4,802	2,242	994
서구	490,977	49,320 (10.0%)	17,132	12,271	9,597	6,162	2,861	1,297
유성구	343,957	25,683 (7.5%)	8,690	6,067	4,935	3,429	1,729	833
대덕구	192,314	22,898 (11.9%)	7,838	5,876	4,631	2,813	1,239	501

출처 :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2017). 주) 2017년 1월 자치구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임.

- 2017년 1월 말 현재 대전시 자치구별, 연령별 노인인구는 총 172,486명 중 서구가 49,320명(10.0%)으로 가장 많았음.
- 동구와 중구는 각각 35,911명과 38,674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5.3%를 차지함으로써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서구는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노인인구가 분포되어 상대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연령별 노인인구 현황에서는 65세에서 70세 미만이 59,099명으로 가장 많았고, 75세 미만이 101,854명(59.1%), 75세 이상이 70,632명(4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현황에서도 서구가 타구에 비해 전체 연령대에서 대체로 많은 노인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음.

2.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1) 대전시 자격별 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1) 대전시 자격별 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 2016년 6월말 현재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은 <표 3-4>와 같이 총 23,329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은 21,930명이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신청자는 1,399명이었음.
- 신청자 중 일반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5,882명이고, 경감 4,385명, 기초수급 2,735명, 의료급여 327명 수준임.
- 성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가 크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은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4] 대전시 자격별 신청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		
	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합계	23,329	1,399	21,930	15,882	693	15,189
남	6,361	798	5,563	4,321	352	3,969
여	16,968	601	16,367	11,561	341	11,220

구 분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계	65세 이상	계	65세 이상	계	65세 이상
합계	4,385	3,857	327	316	2,735	2,568
남	1,268	934	99	94	673	566
여	3,117	2,923	228	222	2,062	2,002

주1) 2016년 6월말 현재 누적 신청자, 주민등록 실주소지 기준, 신청일자외의 만나이 연령대 기준.

주2) 신청자 중 중복 및 사망 건 제외.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6.

(2) 대전시 자치구별 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 대전시 자치구별 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은 <표 3-5>와 같이, 2016년 말 현재 총 22,667명(100%) 중, 서구 6,424명(28.3%), 중구 5,071명(22.4%), 동구 4,705명(20.8%), 유성구 3,480명(15.3%), 대덕구 2,987명(13.2%)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 신청현황은 남성이 6,174명(27.2%)이고, 여성은 16,493명(72.8%)으로 약 3대 7정도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별 여성노인 신청은 서구가 4,749명(20.9%)으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가 2,155명(9.5%)으로 가장 적었음.
- 이 결과는 향후 여성노인의 건강증진 방안이 요구됨을 알 수 있는 수침임.

[표 3-5] 대전시 자치구별 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합계	(비율, %)	65세미만	65세이상	
대전시	합계	22,667	100	1,403	21,264
	남	6,174	27.2	805	5,369
	여	16,493	72.8	598	15,895
동구	소계	4,705	20.8	313	4,392
	남	1,329	5.9	199	1,130
	여	3,376	14.9	114	3,262
중구	소계	5,071	22.4	291	4,780
	남	1,426	6.3	159	1,267
	여	3,645	16.1	132	3,513
서구	소계	6,424	28.3	377	6,047
	남	1,675	7.4	202	1,473
	여	4,749	20.9	175	4,574
유성구	소계	3,480	15.3	197	3,283
	남	912	4.0	113	799
	여	2,568	11.3	84	2,484
대덕구	소계	2,987	13.2	225	2,762
	남	832	3.7	132	700
	여	2,155	9.5	93	2,062

주) 2008년 4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기준, 연도말 자격유지자 기준(사망건 제외).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6.

3. 대전시 자격별 판정 현황

1) 대전시 등급·연령별 판정현황

- 대전시 등급별, 연령별 판정현황은 아래 <표 3-6>과 같음.
- 대전시 등급별 판정현황은 2015년도 말 현재 18,290명이었고, 3등급 5,292명, 4등급 4,780명, 등급외가 4,59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6] 대전시 등급·연령별 판정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외	
계	소계	18,290	1,004	1,987	5,292	4,780	629	4,598
	남	4,993	267	497	1,493	1,294	163	1,279
	여	13,297	737	1,490	3,799	3,486	466	3,319
65세 미만	소계	1,144	114	109	307	261	20	333
	남	648	59	54	167	147	13	208
	여	496	55	55	140	114	7	125
65세 ~69세	소계	1,424	82	122	341	285	28	566
	남	647	37	56	186	137	13	218
	여	777	45	66	155	148	15	348
70세 ~74세	소계	2,697	130	229	658	655	65	960
	남	919	49	101	274	209	25	261
	여	1,778	81	128	384	446	40	699
75세 ~79세	소계	4,131	212	390	1,087	1,042	161	1,239
	남	1,073	59	114	314	271	37	278
	여	3,058	153	276	773	771	124	961
80세 ~84세	소계	4,307	222	457	1,305	1,182	199	942
	남	906	38	82	289	267	42	188
	여	3,401	184	375	1,016	915	157	754
85세 이상	소계	4,587	244	680	1,594	1,355	156	558
	남	800	25	90	263	263	33	126
	여	3,787	219	590	1,331	1,092	123	432

주1) 2015년 연도말 현재 판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건 제외).

주2) 2013년 연보부터 신규작성.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 대전시 연령별 판정현황은 85세 이상에서 4,587명으로 가장 많았고, 80~84세 사이가 4,307명, 75~79세 사이가 4,131명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판정현황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특히 75세 이상에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2) 대전시 자격별 판정 현황

- 한편 대전시 자격별 판정 현황은 다음 <표 3-7>과 같이 17,602명으로 2015년 말보다 688명이 감소하였음.

[표 3-7] 대전시 자격별 판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		
	계	65세미만	65세이상	계	65세미만	65세이상
합계	17,602	4,478	13,124	11,776	3,108	8,668
1등급	906	229	677	621	169	452
2등급	1,813	401	1,412	1,189	279	910
3등급	4,860	1,276	3,584	3,258	919	2,339
4등급	4,884	1,259	3,625	3,209	880	2,329
5등급	841	220	621	652	183	469
등급외	4,298	1,093	3,205	2,847	678	2,169

구 분	경감			의료급여			기초수급		
	계	65세미만	65세이상	계	65세미만	65세이상	계	65세미만	65세이상
합계	2,473	544	1,929	256	75	181	3,097	751	2,346
1등급	156	31	125	18	9	9	111	20	91
2등급	336	70	266	36	6	30	252	46	206
3등급	911	188	723	69	20	49	622	149	473
4등급	820	186	634	79	24	55	776	169	607
5등급	94	19	75	10	4	6	85	14	71
등급외	156	50	106	44	12	32	1,251	353	898

출처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6. 주) 2016년 6월 말 현재.

4. 대전시 장기요양 인정 현황

1) 대전시 자치구·등급별 인정자 현황

- 2016년 6월말 현재 대전시 자치구별 인정자는 <표 3-8>과 같이 3등급과 4등급에서 5,146명과 5,161명으로, 대체로 10,307명이 재가급여대상이고, 1등급과 2등급은 2,926명으로 시설급여 대상임을 알 수 있음.

[표 3-8] 대전시 자치구·등급별 인정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14,100	1,014	1,912	5,146	5,161	867
동구	2,696	164	367	876	1,122	167
중구	3,238	260	438	1,379	1,019	142
서구	4,162	306	538	1,414	1,604	300
유성구	2,234	170	325	819	780	140
대덕구	1,770	114	244	658	636	118

주1) 2016년 6월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 현황이며, 주민등록 실주소지 기준.

주2) 사망자 제외.

출처 : 장기요양통계연보, 2016.

2)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1)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 2015년 말 현재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표 3-9>와 같음.
- 2015년 말 현재 13,692명과 2016년도 6월말 현재 14,100명과 비교해볼 때, 6개월 사이에 408명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15년말 현재 대전시 등급별 인정자 13,692명 중 남성노인은 3,714명(27.1%)이고, 여성노인은 9,978명(72.8%)으로 남성노인대 여성노인의 성비는 약 3대 7정도로 여성노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9]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					
	계 (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정자계	13,692 (100%)	1,004	1,987	5,292	4,780	629
남	3,714 (27.1%)	267	497	1,493	1,294	163
여	9,978 (72.9%)	737	1,490	3,799	3,486	466

주)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

출처 : 장기요양통계연보, 2015.

(2) 대전시 등급별 인정신청 구분별 인정현황

○ 대전시 등급별 인정신청 구분별 인정현황은 <표 3-10>과 같음.

[표 3-10] 대전시 등급·인정신청 구분별 인정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비율,%)	인정 신청	등급 변경신청	갱신 신청	재신청	
전체	467,752 (100%)	93,899	15,713	317,021	41,119	
대전	13,692 (2.9%)	2,281	385	9,820	1,206	
	1등급	1,004 (7.3%)	88	46	820	50
	2등급	1,987 (14.5%)	205	92	1,597	93
	3등급	5,292 (38.7%)	665	132	4,165	330
	4등급	4,780 (34.9%)	981	104	3,100	595
	5등급	629 (4.6%)	342	11	138	138

주1) 2015년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건 제외).

주2) 인정신청은 최초로 인정자가 된 경우이며, 재신청은 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인정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주3) 신청구분은 연도말 유지자격의 최종 신청건 기준 (중복건 제외).

출처 : 장기요양통계연보, 2015.

○ 대전시 등급별 인정 현황은 전국 인정자 대비 2.9%에 해당되며, 3등급이 5,292명(38.7%)로 가장 많았고, 갱신신청을 통해 인정을 받은 경우가 9,820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남.

3) 대전시 등급·자격별 주거상태 현황

- 대전시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등급·자격별 주거상태 현황은 다음 <표 3-11>과 같음.
- 2015년도 말 현재 인정자 중 자격별 주거상태 현황은 전국의 경우, 자택이 304,8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시설 95,398명, 요양병원 46,496명, 요양공동생활가정 10,761명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1] 대전시 등급·자격별 주거상태 현황 (전체)

(단위 : 명)

계	자택	노인요양 시설	요양공동 생활가정	단기보 호시설	양로시 설	요양 병원	기타	
전국	467,752	304,865	95,398	10,761	929	959	46,496	8,344
대전	13,692	9,210	2,669	197	3	16	1,391	206
1등급	1,004	338	316	18	-	1	285	46
2등급	1,987	782	733	46	-	2	403	21
3등급	5,292	3,527	1,127	86	1	7	475	69
4등급	4,780	3,996	480	46	2	6	199	51
5등급	629	567	13	1	-	-	29	19

주1) 2015년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 (사망 건 제외).

주2) 주거상태는 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

주3) 기타는 한센병 집단농원, 기타수용시설 등 포함.

출처 : 장기요양통계연보, 2015.

- 대전시 등급별 주거상태 현황도 자택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9,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노인요양시설 2,669명, 요양병원 1,391명 순이었음.
- 등급별로는 자택이 4등급에서 3,9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시설은 3등급에서 가장 많았음.

2절 대전시 장기요양기관 및 전문인력 현황

1. 장기요양기관 현황

1) 대전시 자치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 2016년 6월말 현재 대전시 자치구별 장기요양기관 및 이용정원 현황은 <표 3-12>와 같이, 총 646기관에 6,869명임.
 - 이 중 시설요양기관은 117개소(18.1%)에 4,924명이고, 재가요양기관은 529개소(81.9%)에 1,945명임.

[표 3-12] 대전시 자치구별 기관수 및 정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시설		재가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합계	646 (100%)	6,869	117 (18.1%)	4,924	529 (81.9%)	1,945
동구	128	1,446	26	1,116	102	330
중구	174	1,548	23	1,140	151	408
서구	160	2,010	35	1,292	125	718
유성구	104	1,036	15	748	89	288
대덕구	80	829	18	628	62	201

주1) 2016년 6월말 현재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주2) 재가기관 정원은 단기보호와 주·야간 보호만 해당.

출처 : 장기요양통계연보, 2016.

- 자치구별 시설요양기관은 중구가 17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용정원은 서구가 2,010명으로 가장 많았음.
- 자치구별 재가요양기관은 중구가 151개소로 가장 많았지만, 이용정원은 서구가 718명으로 가장 많았음. 이에 비해 시설요양기관은 서구가 35개소 1,292명으로 가장 많았음.

2) 대전시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 대전시 연도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표 3-13>과 같음.
- 2008년 265개소에서 2010년 527개소로 계속 증가했다가 2011년과 2012년 499개소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523개소, 2014년 562개소, 2015년 617개소로 증가하였음.

[표 3-13] 대전시 연도·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08~2015)

(단위 : 개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계	265	7,279	520	3,034	527	3,526	499	3,657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계	499	4,192	523	4,734	562	5,529	617	6,358

주) 각 연도말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이며, 해당 연도말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대상.
출처 : 장기요양통계연보(각 연도별).

2. 장기요양 전문인력 현황

- 2016년 6월말 현재 대전시 자치구별 요양기관의 전문인력은 다음 <표 3-14>와 같이, 총 12,549명으로, 요양보호사 11,650명, 사회복지사 428명, 간호조무사 238명 순으로 나타남.
- 대전시 자치구별 요양기관 전문인력 중 요양보호사가 11,650명으로 92.8%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요양보호사가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치구별 요양보호사는 중구가 4,550명(39.0%)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3,291명(28.2%), 동구 2,362명(20.3%), 유성구 2,179명(18.7%), 대덕구 1,453명(12.5%) 순으로 나타남.

[표 3-14] 대전시 자치구별 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총합
계	428	46	90	238	65	11,650	32	12,549
동구	64	6	21	52	15	2,362	9	
중구	115	15	16	52	13	4,550	10	
서구	116	15	20	74	12	3,291	8	
유성구	81	10	22	32	15	2,179	1	
대덕구	53	3	12	28	10	1,453	4	

주1) 2016년 6월말 현재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주2) 물리치료(작업치료)사에 치위생사 포함, 지역별 중복 제거.

출처 : 장기요양통계연보, 2016.

3절 대전시 요양보호사 및 교육기관 현황

1. 대전시 요양보호사 양성 현황

- 2008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대전시에서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표 3-15>와 같이, 2017년 1월 현재 70,970명으로 집계됨.
-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요양보호사의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각 년도에 16,846명, 17,533명, 15,319명으로 과잉 양성되어 총 49,698명이 배출되었음.
- 2010년 국가자격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는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실제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016년 6월 현재 11,650명으로 전체 요양보호사의 약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5]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규		16,815	17,337	15,076	3,963	2,372	2,903	3,142	3,159	3,246
	누계	16,815	34,152	49,228	53,191	55,563	58,466	61,608	64,767	68,013
재발급		31	196	243	275	315	431	413	465	527
	누계	31	227	470	745	1,060	1,491	1,904	2,369	2,896
합계		16,846	17,533	15,319	4,238	2,687	3,334	3,555	3,624	3,773
누계		16,846	34,379	49,698	53,936	56,623	59,957	63,512	67,136	70,909

출처 : 대전시 노인보육과, 2016. 12월 현재.

2.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1)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현황

-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연도별 설치현황은 <표 3-16>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말 현재 37개소의 교육기관이 설치되었고, 2009년 11개소가 신설되었음.
- 2010년 설치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되면서 신규 및 기존기관에서 폐업과 개업이 이루어졌고, 2011년 현재 36개소였다가 2012년 현재 26개소로 감소하였음.
- 2013년 2개소가 폐업하여 2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014년부터는 개업 및 폐업은 없지만, 2011년부터 요양보호사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교육기관의 과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교육기관들이 운영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교육기관의 적정 규모 수요 추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음.

[표 3-16]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교육원	37	-	11	2	16	18	8	10	-	2
기관수	37		46		44		36		26	

구분	2013		2014		2015		2016		비고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교육원	-	2	-	-	-	-	-	-	-
기관수	24 (1휴지)		22 (1휴지)		22 (2휴지)		22 (1휴지)		-

출처 : 대전시 노인보육과(2017), 각 연도말 기준.

2) 대전시 자치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1) 대전시 자치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 대전시 자치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표 3-17>과 같이 2015년 현재 휴지기관을 제외하고 총 20개소로 서구가 7개소로 가장 많고, 동구 5개소, 중구 4개소, 대덕구 3개소, 유성구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대전시 자치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을 비교했을 때, 유성구가 1개소로서 타 구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유성구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 균형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3-17]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20	5	4	7	1	3

출처 :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2015 현재).

(2)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을 정리하면 <표 3-18>과 같음.

[표 3-18]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순번	교육기관명	주소	인허가일자
1	가톨릭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647, 2층 (용전동)	2010-07-30
2	국제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동구 대전로 696, 3층 (인동)	2010-07-14
3	나이팅게일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중구 계룡로 880, 6층 (오류동)	2010-08-06
4	남대전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종로 185 (석교동)	2010-08-06
5	다운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서구 관저중로95번길 74, 4층 (관저동)	2010-09-10

순번	교육기관명	주소	인허가일자
6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서구 계룡로 636, 3층 (용문동,도산회관)	2010-07-12
7	도마동대전간호학원부설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서구 계백로 1452, 3층 (도마동)	2010-10-11
8	동대전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동구 옥천로 140, 4층 (관암동)	2010-07-23
9	미래요양보호사교육원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 565, 2,3층 (중리동)	2010-08-13
10	미즈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38, 508,9호 (둔산동,둔산메트로존)	2010-07-12
11	변동성모요양보호사교육원	대전시 서구 도산로 196, 지하1층 (변동)	2010-08-03
12	성모 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 194, 3층 (자양동)	2010-08-10
13	세종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중구 동서대로 1220, 2층 (태평동)	2010-06-29
14	신탄진성모요양 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대덕구 석봉북로 26, 2층 (석봉동)	2010-07-30
15	실버 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대덕구 오정로100번길 95, 2층 (오정동)	2010-09-08
16	우송정보대학부설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동구 백룡로 59, 6층 (자양동,학술정보센터)	2010-07-27
17	유성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13, 2층 (구암동)	2010-09-20
18	청남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서구 청사서로 30, 5층 (월평동)	2010-10-04
19	한결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162번길 23 (갈마동,4층)	2010-10-07
20	한빛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전시 중구 보문로260번길 12, 1층 (대흥동)	2010-10-20

출처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2015년 기준).

4장

대전시 요양보호사 관련 수요 추계

- 1절 적용인구 및 요양인정 추계
- 2절 대전시 요양보호사 양성 및
수요 추계
- 3절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4장 대전시 요양보호사 관련 수요 추계

1절 적용인구 및 요양인정 추계

1. 대전시 장기요양 적용인구 추계

1) 대전시 연도별 노인인구 및 구성비

- 대전시 노인인구는 <표 4-1>과 같이 2000년 전체인구 대비 6.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면서 2020년 13.1%에서 2030년 21.0%, 2040년 28.3%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4-1] 대전시 연도별 노인인구 및 구성비

(단위 : 천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30	2040
전체인구	1,317	1,462	1,501	1,522	1,534	1,551	1,526
노인인구	85	101	129	165	201	326	432
노인비율	6.5	6.9	8.6	10.8	13.1	21.0	28.3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4.

- 장래인구추계(2010-2060)의 중위 가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인구는 2013년 5,022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 5,216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추세에 돌입하여 2040년에 5,10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비해 대전시의 인구는 2015년 현재 152만2천명에서 2020년 153만4천명, 2030년 155만1천명으로 증가하다가 2040년 152만6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한편 대전시 노인인구는 2000년 8만5천여 명에서 2015년 현재 16만5천 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2020년 20만1천명, 2030년 32만6천명, 그리고 2040년에 43만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장래인구추계, 2014).

2) 연도별 장기요양 적용인구 추이

- 대전시 전체 인구는 <표 4-2>와 같이 2008년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대전시 노인 장기요양 적용인구 추이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2012년까지는 소폭으로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7-8천여 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4-2] 연도별 장기요양 적용인구 추계

(단위 : 천명)

구분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전시 전체 인구	1,505	1,526	1,535	1,535	1,522	1,525	1,527
노인 적용 인구	140	142	150	157	165	172	179
	9.3%	9.3%	9.8%	10.3%	10.8%	11.3%	11.7%

구분	2018	2019	2020	2025	2030	2035	2040
대전시 전체 인구	1,529	1,532	1,534	1,544	1,551	1,546	1,526
노인 적용 인구	186	194	201	264	326	379	432
	12.2%	12.6%	13.1%	17.1%	21.0%	24.5%	28.3%

주)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 건 제외), 2011년 이후부터 요양보호사 중복 수치 제외.

출처 : 장기요양통계연보(각 연도별).

2.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요양인정 추계

1) 연도별 장기요양 신청 및 요양인정 추이

○ 2008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요양인정 추이는 <표 4-3>과 같음.

[표 4-3] 연도별 장기요양 신청 및 요양인정 추이(2008~2016)

구분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전시 전체인구(천명)	1,505	1,526	1,535	1,535	1,522	1,515
노인 적용인구 (천명, %)	140	142	150	157	165	172
	9.3	9.3	9.8	10.3	10.8	11.3
신청자(명)	10,489	18,864	20,050	21,415	22,667	24,019
신청률(%)	7.5	13.3	13.4	13.6	13.8	14.0
판정자(명) (등급내외)	7,500	14,689	15,769	17,154	18,290	19,491
	비율1 ⁸⁾	77.9	78.6	80.1	80.7	81.5
- 노인인구대비	비율2 ⁹⁾	10.3	10.5	10.8	11.1	11.5
인정자(명) (판정 대비인정률)	6,400	10,431	11,516	12,712	13,692	14,755
	85.3%	71.0%	73.0%	74.1%	74.9%	75.7%
요양보호사(명) (인정자대비)	4,224	9,327	10,411	10,632	11,648	12,134
	66.0%	89.4%	90.4%	83.6%	85.0%	82.2%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4.3%	7.3%	7.7%	8.1%	8.3%	8.6%

주)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 건 제외), 2011년 이후부터 요양보호사 중복수치 제외.

출처 : 장기요양통계연보(각 연도별).

8) 판정자 비율1은 신청자에 대한 비율임.

9) 판정자 비율2는 노인인구에 대한 비율임.

- 장기요양 신청자는 2008년 10,489명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 2013년에는 20,050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고, 2016년 24,019명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장기요양 판정자 수는 2008년 7500명에서 2013년 15,76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3년 현재 신청자에 대한 판정자 비율은 78.6%임.
 - 비율2에 나타난 것처럼 노인인구 대비 판정자 비율은 2012년 10.3%에서 매년 0.2~0.4%p 소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 11.5%임.
-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2008년 6,400명으로 판정자 대비 인정률은 85.3%였으나, 2012년 10,431명(71.0%), 2014년 12,712명(74.1%), 2016년 14,755명(75.7%)으로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8년 4.3%였으나, 2012년 이후 매년 0.2~0.4%p 증가하여 2014년 8.1%였고, 2016년 8.6%를 나타냄.

2) 연도별 장기요양 신청 및 요양인정 추계

-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장기요양 신청 및 요양인정 현황을 추정해보면 <표 4-4>와 같음.
- 신청자 및 판정자, 그리고 인정자 현황은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2017년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신청자는 2017년 25,368명에서 2020년 29,748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며, 인정자는 2017년 16,078명에서 2020년 20,502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함.
- 노인인구의 증가와 신청자 및 판정자, 그리고 인정자 추계를 근거로 요양보호사 수요를 추정해보면, 인정자 대비 85% 수준으로 2017년 13,666명에서 2020년 17,426명으로 전망됨.

[표 4-4] 연도별 장기요양 신청 및 요양인정 추계(2017~2030)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5	2030
대전시 전체 인구(천명)	1,527	1,529	1,532	1,534	1,544	1,551
노인 적용인구 (천명, %)	179	186	193	201	264	326
	11.7	12.2	12.6	13.1	17.1	21.0
신청자(명)	25,368	26,848	28,176	29,748	41,712	55,420
신청률(%) ¹⁰⁾	14.2	14.4	14.6	14.8	15.8	17.0
판정자(명) ¹¹⁾ (등급내외)	20,802	21,907	23,245	24,810	36,123	49,767
	81.3	81.6	82.5	83.4	86.6	89.0
- 노인인구대비	11.8	12.1	12.4	12.7	14.2	15.7
인정자(명) ¹²⁾ (판정 대비 인정률%)	16,078	17,526	18,913	20,502	32,208	44,988
	77.3	77.7	79.0	80.3	85.9	87.9
요양보호사 ¹³⁾ (인정자대비)	13,666	14,897	16,076	17,426	27,376	38,239
	85%	85%	85%	85%	85%	85%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9.0%	9.4%	9.8%	10.2%	12.0%	13.8%

출처 : 장기요양통계연보(각 연도별).

10) 노인적용인구에 대한 신청률을 기준으로 증가추이를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추정함.

11) 판정자 수요추계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청자 대비 판정률과 증가율로 산출함

12) 인정자 수요추계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과 증가율로 산출함

13) 요양보호사 수요추계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추이를 분석하여 85% 일률 적용함

2절 대전시 요양보호사 양성 및 수요 추계

1. 대전시 요양보호사 양성 추계

1)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배출 현황

-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배출현황은 <표 4-5>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급되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대폭 감소하여 3,000여 명대로 배출되었음.

[표 4-5]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배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6,815	17,337	15,076	3,963	2,372	2,903	3,142	3,159	3,246
누계	16,815	34,152	49,228	53,191	55,563	58,466	61,608	64,767	68,013

출처 : 대전시 노인보육과(2017).

2) 대전시 연도·연령대별 요양보호사 배출 현황

(1) 대전시 연도·연령대별 배출 현황

- 대전시의 요양보호사 배출 현황을 연도별 연령대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4-6>과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전체 68,013명의 72.4%에 해당되는 49,228명임.
- 각 연도별 현황에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09년에 6,09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5,350명, 2008년 5,203명 배출되었고, 2012년 949명을 제외하고는 2016년 현재까지 1300여명의 50대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음.
- 연령대별로 50대 다음으로 40대의 요양보호사가 많은데, 2008년 6,022명, 2009년 5,967명, 2010년 4,734명 순으로 배출되었고, 그 이후부터 상당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대전시 연도·연령대별 배출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6,815	17,337	15,076	3,963	2,372	2,903	3,142	3,159	3,246
누계	16,815	34,152	49,228	53,191	55,563	58,466	61,608	64,767	68,013
20대	1,854	1,124	936	351	210	212	144	79	86
30대	2,766	2,238	2,241	547	256	232	248	230	226
40대	6,022	5,967	4,734	1,324	657	741	812	797	873
50대	5,203	6,095	5,350	1,330	949	1,185	1,305	1,324	1,306
60대	931	1,699	1,583	369	273	472	569	656	656
70대	37	209	225	42	27	56	61	73	95
80대	2	5	7	0	0	5	3	0	4

출처 : 대전시 노인보육과(2017).

(2) 대전시 연령대·성별 요양보호사 배출 누적 현황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부터 2016년 말 현재까지 대전시의 연령대별 요양보호사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표 4-7>과 같이, 전체 68,013명 중 50대가 24,047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21,927명(32.2%)임.
- 2008년부터 2016까지 배출된 대전시 요양보호사 중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0대, 60대, 20대 순이며, 40대와 50대가 60% 이상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2016년 말 현재 대전시에서 배출된 요양보호사 전체 68,013명 중 남성이 6,727명(9.8%)이었고, 여성이 61,286명(90.2%)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 이므로 요양보호사 배출에 있어서 성별 불균형이 매우 심하게 나타남.
- 남성 요양보호사 대비 여성요양보호사가 과다하게 편중되어 남성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남성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유 인책이 시급함.

[표 4-7] 대전시 연령대·성별 요양보호사 배출 누적 현황(2008~2016)

(단위 :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누계	4,996	8,984	21,927	24,047	7,208	825	26	68,013
	7.3%	13.2%	32.2%	35.4%	10.6%	1.2%	0.04%	100.0%
남자	1,009	1,097	1,521	1,733	1,033	313	21	6,727
	1.5%	1.6%	2.2%	2.5%	1.5%	0.5%	0.03%	9.8%
여자	3,987	7,887	20,406	22,314	6,175	512	5	61,286
	5.9%	11.6%	30.0%	32.8%	9.1%	0.8%	0.01%	90.2%

출처 : 대전시 노인보육과(2017), 각 연도 말 현재 기준임.

- 연령대별 요양보호사 배출 현황을 살펴봐도 남성보다 여성이 각 연령대별로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임.

3)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합격자 추계

- 지금까지의 요양보호사 배출현황을 근거로, 향후 5개년의 요양보호사 연도별 합격자를 추정해보면, <표 4-8>과 같음.

[표 4-8]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합격자 추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명)	3,000	3,000	3,000	3,000	2,600
누계(명)	71,013	74,013	77,013	80,013	82,613

주) 대전시 노인보육과 제공 4개년(2013-2016) 합격 배출 기준으로 계상함.

- 당분간은 3000명대로 2016년 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별한 유인책을 쓰지 않는 한, 전체적인 생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합격생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2. 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및 수요 추계

1)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후 2016년 말 현재까지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배치 현황은 <표 4-9>와 같음.

[표 4-9]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명)	4,224	7,313	9,662	9,482	9,343	10,402	10,651	11,648	12,134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008년에는 4,224명에서 200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7,313명이 된 이후 2010년부터는 다소 주춤하다가 2012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실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015년 말 현재 11,648명으로 같은 해 배출된 누적 요양보호사 64,767명 <표 4-5>에 비하면 17.9%에 불과한 수준임.

2) 대전시 연도·연령대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2009~2016)

- 한편 대전시 연도별, 연령대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표 4-10>과 같이 2012년 이후 해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표 4-10] 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현황(2009~2016)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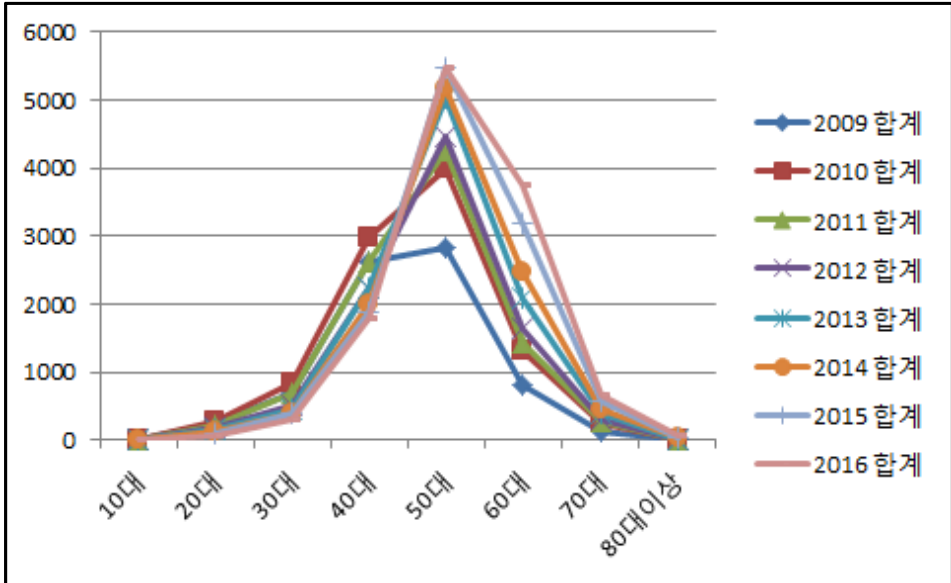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2009	10	243	693	2,607	2,834	812	112	2	7,313
2010	9	279	849	2,984	3,992	1,310	232	7	9,662
2011	4	220	681	2,616	4,266	1,421	268	6	9,482
2012	2	173	518	2,228	4,454	1,644	316	8	9,343
2013	4	148	467	2,242	5,034	2,084	402	21	10,402
2014	1	129	398	2,007	5,168	2,460	462	26	10,651
2015		99	384	1,887	5,488	3,193	557	40	11,648
2016	3	73	314	1,801	5,488	3,750	653	52	12,134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 대전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009년에는 4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40대보다 60대가 더 많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연령대별 현황의 큰 특징을 살펴보면, 10대부터 40대까지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은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근무행태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요구됨.
- 요양보호사의 연령이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노노(老老)케어가 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장창수, 2015), 특히 20대~40대의 젊은 요양보호사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3) 대전시 요양보호사 연도별 근무현황

○ 대전시 요양보호사 연도별 근무현황은 [그림 4-1]과 같이 50대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림 4-1] 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2009~2016)

4) 대전시 연령대별, 성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 대전시 요양보호사 성별 근무현황을 연도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표 4-11>과 같이 남성보다는 여성 요양보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4-11] 대전시 연령대·성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2008~2016)

(단위 : 명)

구 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2009	합계	7,313	10	243	693	2,607	2,834	812	112	2
	남자	607		72	96	164	146	81	46	2
	여자	6,706	10	171	597	2,443	2,688	731	66	

구 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2010	합계	9,662	9	279	849	2,984	3,992	1,310	232	7
	남자	846	1	73	120	201	216	143	86	6
	여자	8,816	8	206	729	2,783	3,776	1,167	146	1
2011	합계	9,482	4	220	681	2,616	4,266	1,421	268	6
	남자	751		47	98	189	197	127	89	4
	여자	8,731	4	173	583	2,427	4,069	1,294	179	2
2012	합계	9,343	2	173	518	2,228	4,454	1,644	316	8
	남자	703	1	39	74	156	194	127	107	5
	여자	8,640	1	134	444	2,072	4,260	1,517	209	3
2013	합계	10,402	4	148	467	2,242	5,034	2,084	402	21
	남자	746	1	38	65	147	215	146	121	13
	여자	9,656	3	110	402	2,095	4,819	1,938	281	8
2014	합계	10,651	1	129	398	2,007	5,168	2,460	462	26
	남자	746		33	62	133	211	157	133	17
	여자	9,905	1	96	336	1,874	4,957	2,303	329	9
2015	합계	11,648		99	384	1,887	5,488	3,193	557	40
	남자	761		26	63	124	204	178	139	27
	여자	10,887		73	321	1,763	5,284	3,015	418	13
2016	합계	12,134	3	73	314	1,801	5,488	3,750	653	52
	남자	735		25	46	112	188	183	149	32
	여자	11,399	3	48	268	1,689	5,300	3,567	504	2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2017).

- 2015년 말 현재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남성이 3,714명이고, 여성이 9,978명인데 비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남성 요양보호사는 761명이고, 여성 요양보호사는 10,887명으로써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요양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요양보호사는 607명이고, 여성 요양보호사는 6,706명으로써 남성 대 여성의 비가 1대 10이었다면, 2016년에는 남성 요양보호사가 735명이었고, 여성 요양보호사는 11,399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5)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양보호사 수요 예측을 해보면 <표 4-12>와 같이 2017년 13,666명이고, 2020년에는 17,426명으로, 2030년에는 38,239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 결과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기요양 인정 수의 자연증가분의 영향을 감안한 수치이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12] 대전시 연도별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2017~2030)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5	2030
계	13,666명	14,897명	16,076명	17,426명	27,376명	38,239명

주) 이 수치는 요양보호사의 수요 추계를 활용하여 교육기관의 적정규모를 추정하였고, 각 연도별 인정자 수의 약 85%를 임의로 적용한 수치로 실제와는 다소 다를 수 있음.

3절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수요추계

1.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별 배출현황

[표 4-13] 대전시 교육기관별 요양보호사 배출현황(2013~2014)

(단위 : 명, %)

구분	2013				2014			
	수료	응시	합격	합격률	수료	응시	합격	합격률
기관평균	137.0	145.5	130	89.4	160.1	174.8	150.7	86.2
계	2878	3055	2731	89.4	3362	3671	3164	86.2
A 교육원	101	111	107	96.4	122	132	115	87.1
B 교육원	24	25	24	96	30	31	31	100
C 교육원	264	269	242	90	359	363	314	86.5
D 교육원	98	106	97	91.5	112	119	100	84
E 교육원	9	10	10	100	6	7	5	71.4
F 교육원	33	33	31	93.9	10	10	10	100
G 교육원	93	99	89	89.9	110	115	98	85.2
H 교육원	196	265	219	82.6	272	361	295	81.7
I 교육원	94	61	57	93.4	128	126	116	92.1
J 교육원	191	198	185	93.4	122	126	123	97.6
K 교육원	11	13	9	69.2	17	15	9	60
L 교육원	58	50	46	92	74	85	81	95.3
M 교육원	509	550	492	89.5	647	739	578	78.2
N 교육원	89	85	76	89.4	112	119	103	86.6
O 교육원	117	120	114	95	103	111	108	97.3
P 교육원	26	32	29	90.6	29	36	35	97.2
Q 교육원	104	104	93	89.4	71	71	70	98.6
R 교육원	2	-	-	휴지	3	-	-	휴지
S 교육원	270	274	249	90.9	234	246	211	85.8
T 교육원	153	174	160	92	195	210	192	91.4
U 교육원	343	385	316	82.1	465	486	429	88.3
V 교육원	93	91	86	94.5	141	163	141	86.5

○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양성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별 배출 현황은 위 <표 4-13>과 다음 <표 4-14>와 같음.

[표 4-14] 대전시 교육기관별 요양보호사 배출현황(2015~2016)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수료	응시	합격	합격률	수료	응시	합격	합격률
기관평균	158.7	175.7	152.5	86.8	174.2	178.3	149.5	83.9
계	3173	3514	3049	86.8	3659	3744	3140	83.9
A 교육원	92	132	113	85.6	185	163	148	90.8
B 교육원	48	50	48	96	39	37	34	91.9
C 교육원	319	328	301	91.8	462	456	413	90.6
D 교육원	94	99	84	84.8	104	100	79	79
E 교육원	2	6	3	50	263	249	210	84.3
F 교육원	52	52	45	86.5	-	-	-	휴지
G 교육원	163	171	143	83.6	25	25	25	100
H 교육원	254	352	283	80.4	84	77	65	84.4
I 교육원	135	147	124	84.4	401	430	353	82.1
J 교육원	160	134	128	95.5	132	125	112	89.6
K 교육원	10	10	7	70	60	60	54	90
L 교육원	23	24	23	95.8	9	11	11	100
M 교육원	474	509	438	86.1	14	14	14	100
N 교육원	126	147	126	85.7	572	653	459	70.3
O 교육원	103	116	112	96.6	148	159	131	82.4
P 교육원	18	-	-	휴지	115	114	107	93.9
Q 교육원	116	116	110	94.8	18	12	8	66.7
R 교육원	-	-	-	휴지	98	98	98	100
S 교육원	220	243	204	84	22	22	22	100
T 교육원	171	196	172	87.8	188	188	167	88.8
U 교육원	429	520	440	84.6	591	608	507	83.4
V 교육원	164	162	145	89.5	129	143	123	86

출처 : 대전시 노인보육과, 2017.

- 교육기관당 평균은 합격자 기준 약 130~150명 수준이었고, 2013년 130명, 2014년 151명, 2015년에는 153명이었고, 2016년 150명이었음.
- 총 22개소 교육기관 중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휴지상태인 교육기관은 2013년 1개소, 2014년 1개소, 2015년 2개소, 2016년 1개소로 나타남.
 - 즉 2013년과 2014년에는 21개소가 운영되었고, 2015년에는 20개소가 운영되었으며, 2016년에는 21개소가 운영되었음.
- 합격률은 2013년 89.4%로 가장 높았고, 2014년 86.2%, 2015년 86.8%이었고, 2016년에는 83.9%로 가장 낮았으며, 최하 50.0%에서 최고 100.0%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2016년의 경우 1개의 교육기관이 휴지상태이며, 수료상태에서도 L교육원의 경우 9명부터 U교육원 591명까지 총 21개소가 운영되었으나, 7개소만이 평균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시켰고, 나머지 14개소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료 평균에 미달한 교육기관을 제외한 일부 교육기관들 중 C교육원은 2013년 264명, 2014년 359명, 2015년 319명, 2016년 462명으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요양보호사가 수료상태임.
 - M교육원의 경우 2013년 509명, 2014년 647명, 2015년 474명이 수료상태이며, U교육원의 경우에는 2013년 343명, 2014년 465명, 2015년 429명, 2016년 591명이 수료상태임.
 - 이처럼 일부 교육기관에서 너무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출함으로써 휴지상태의 교육기관 및 저조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는 교육기관들과의 수료격차는 더 크게 벌어짐.
- 결과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기관별 요양보호사 수료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기관별 수료 평균에 미달한 교육원은 2013년에는 15개소, 2014년에는 16개소, 2015년 13개소, 2016년 15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만 보더라도 특히 F교육원처럼 휴지상태인 교육기관을 제외해도, L교육원9명이나 M교육원 14명, Q교육원 18명, S교육원 22명, G교육원 25명 등의 경우에는 심각한 운영난을 겪을 것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수요추계

1)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현황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현황은 <표 4-15>와 같이, 2008년에는 37개소가 설치되었고, 2009년 46개소, 2010년 설치제에서 지정제로 바뀌면서 44개소에서 2013년 24개소로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4-15]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교육원	37	-	11	2	16	18	2	10	-	10
기관수	37		46		44		36		26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교육원	-	2	-	-	-	-	-	-	-	-
기관수	24 (휴지 1)		22 (휴지 1)		22 (휴지 2)		22 (휴지 1)		22 (휴지1)	

출처 : 대전시 노인보육과, 2017.

- 2014년부터는 폐업을 하는 교육기관 없이 1~2군데가 휴지 상태로 2017년 현재 2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연간 10명에서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배출시키는 교육기관이 절반 이상이 되는 만큼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요양보호사 모집 등 교육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폐업이 없이 휴지상태로 있는 것은 교육기관의 설치가 지정제로 되면서 신규 설치가 까다로워진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또한 일부 교육기관들에서는 부설로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등)의 운영을 겸하면서 교육기관의 운영을 통해 요양보호사 수급에 도움이 되므로, 굳이 폐업을 하지 않고 소수인원을 배출하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2)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수요추계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현황을 토대로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를 살펴보면 <표 4-16>과 같음.

[표 4-16]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단위 :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비고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개업	폐업	
교육원	-	1	-	0	-	1	-	0	
기관수	21		21		20		20		

- 지금과 같은 상태로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요양보호사 배출이 이루어진다면 2017년 현재 대전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신규 설치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2018년과 2020년 1개소 폐업으로 당분간은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 전망됨.
- 오히려 대전시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운영 실태 파악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교육기관에 교육생들이 너무 많이 편중되지 않도록 수료인원 상·하한선을 지정하거나, 교육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제도 및 우수한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대전시는 향후 5년 간 유예기간을 정하여 신규 설치를 자제하고, 요양보호사 배출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년간 실적이 저조하거나 1년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대전시 장래 요양보호사 수요 및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 지금까지의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래 요양보호사 수요추계 및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17>과 같음.
- 공급측면에서 교육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 37개소에서 2010년 44개소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교육기관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된 데다가 자격시험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받아 교육생이 대폭 감소하여 2015년 22개소로 감소되었음.
- 장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는 2020년 20개소로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다가 2025년 18개소로, 2030년 17개소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
- 요양보호사 배출현황은 2015년 현재 3,159명에서 해마다 약간씩 줄어 2020년 3,000명, 2025년 2,600명, 2030년 2,500명 수준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표 4-17] 대전시 장래 요양보호사 수요 및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구 분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공급	교육기관(개소)	37	44	22	20	18	17
	요양보호사(명)	16,815	15,076	3,159	3,000	2,600	2,500
	요양보호사 배출인원 누계(명)	16,815	49,228	64,767	71,767	79,767	87,267
수요	노인인구(천명)	140	129	165	201	264	326
	인정자(명)	6,400	8,203	13,692	20,502	32,208	44,988
	요양보호사 근무 인원(명)	4,224	9,662	11,648	17,426	27,376	38,239
수요 대 공급 비율		1 : 4	1 : 5	1 : 6	1 : 4	1 : 3	1 : 2.3

- 주1)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장래 수요예측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수 교육이나 직무교육 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활용방안이 강구된다면 장래 교육기관 적정규모 축소는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음.
- 주2) 요양보호사 배출 누계현황이 2020년에 3,000명인 것은, 2011년 이후부터 2016년 말까지 18,785명이 실제 배출되었고, 연도별 평균 3,130명이 배출되었으므로, 2020년까지 연 3,000명씩 임의로 추정한 수치임.
- 주3) 요양보호사 배출누계수치 중 2020년 71,767명의 경우, 2015년의 64,767명 + (3,000명 * 5년) - (자연감소분 60대 이후 배출 약 8,000명) = 71,767명임.
- 주4) 요양보호사 배출 누계수치 중 2025년 79,767명의 경우, 2020년 71,767명 + (2,600명 * 5년) - (자연감소분 1,000명 * 5년) = 79,767명임.
- 주5) 요양보호사 배출 누계수치 중 2030년 87,267명의 경우, 2025년 79,767명 + (2,500명 * 5년) - (자연감소분 1,000명 * 5년) = 87,267명임.

- 한편, 수요측면에서 대전시의 노인인구는 2015년 165,000명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요양 인정자 수도 2015년 13,692명에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측면에서도 2008년 4,224명에서 2015년에 11,648명과 2020년 17,426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2008년 수요 대 공급 비율은 1대 4에서 2015년 1대 6으로 요양보호사가 과잉 배출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020년 1대 4에서 2025년 1대 3, 2030년 1대 2.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지금까지 대전시 노인인구 추계 및 연도별 요양보호사 수요추계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요양보호사 수요 대비 교육기관이 다소 과다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신규 설치할 경우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거나
 - 건강보험수가가 상승하거나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개선 및 처우개선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면 교육 신청자가 증가되어 교육기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요와 공급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요구됨.

5장

결론

1절 연구결과 요약

2절 정책제언

3절 결론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1. 대전시 요양보호사 양성 현황

- 2008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대전시에서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2017년 1월 현재 70,970명으로 집계됨.
-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급격한 요양보호사의 배출이 있었고, 2008년 16,846명, 2009년 17,533명, 2010년 15,319명으로 3년에 걸쳐 총 49,698명이 배출되었음.
- 2010년 국가자격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는 그 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6년여 동안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18,785명이었음.
- 최근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양성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별 배출 현황은 교육기관별 평균은 130~180명 수준으로 나타났음.
 - 교육기관별 수료현황은 2013년 137명, 2014년 160명, 2015년 159명, 2016년 174명으로 나타났으며, 합격현황은 2013년 130명, 2014년 151명, 2015년 153명, 2016년 150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17년 3월 현재 22개소로 이 중 절반 이상은 교육기관 당 평균배출 인원 이하에 훨씬 미달함으로써 교육기관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부실 등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기관별 수료를 중심으로 양성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기관별 양성 평균에 미달한 교육기관은 2013년에 15개소, 2014년 16개소, 2015년 13개소, 2016년 15개소임.

- 평균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배출시킨 교육기관은 2013년 7개소, 2014년 6개소, 2015년 6개소, 2016년 6개소였고, 그 중 특정 3-4개소의 교육기관들은 평균(약 157명)보다 훨씬 많은 300명대에서 600명 정도의 요양보호사를 배출시킨 것으로 나타나 교육기관간의 격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2.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 지금까지의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래 요양보호사 수요추계 및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를 정리해 보면 <표 5-1>과 같음.

[표 5-1] 대전시 장래 요양보호사 수요 및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구 분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공급	교육기관(개소)	37	44	22	20	18	17
	요양보호사(명)	16,815	15,076	3,159	3,000	2,600	2500
	요양보호사 배출인원 누계(명)	16,815	49,228	64,767	71,767	79,767	87,267
수요	노인인구(천명)	140	129	165	201	264	326
	인정자(명)	6,400	8,203	13,692	20,502	32,208	44,988
	요양보호사 근무 인원(명)	4,224	9,662	11,648	17,426	27,376	38,239
수요 대 공급 비율		1 : 4	1 : 5	1 : 6	1 : 4	1 : 3	1 : 2.3

주1)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치는 장래 수요예측이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 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활용방안이 강구된다면 장래 교육기관 적정규모 축소는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음.

- 공급측면에서 교육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 37개소에서 2010년 44개소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교육기관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된 데다가 자격시험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받아 교육생이 대폭 감소하여 2015년 22개소로 감소되었음.

- 장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는 2020년 20개소로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다가 2025년 18개소로, 2030년 17개소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
- 요양보호사 배출현황은 2015년 현재 3,159명에서 해마다 약간씩 줄어 2020년 3,000명, 2025년 2600명, 2030년 2500명 수준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수요측면에서 대전시의 노인인구는 2015년 16만 5천명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요양 인정자 수도 2015년 13,692명에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측면에서도 2008년 4,224명에서 2015년에 11,648명과 2020년 17,426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2008년 수요 대 공급 비율은 1대 4에서 2015년 1대 6으로 요양보호사가 과잉 배출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020년 1대 4에서 2025년 1대 3, 2030년 1대 2.3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남.

제2절 정책제언

- 앞에서 대전시 노인인구 추계 및 연도별 요양보호사 수요추계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요양보호사 수요 대비 교육기관이 다소 과다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교육기관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거나
 - 건강보험수가 상승,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개선 및 처우개선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면, 교육 신청자가 증가되어 교육기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요와 공급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요구됨.
 - 더불어 대전시에서는 교육기관 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니 교육기관 수 상한제를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현재와 같이 교육기관이 다소 과다하게 설치 운영될 경우, 교육기관들 간의 교육생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편법적으로 수강료 할인,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대전시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기관 간 연대 의식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육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별 적정 교육생 수를 조정하여 제시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질 평가 및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합격률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수준 향상을 위해서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정부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김성훈, 신주화, 하정미(2010),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노년학, 30(1), 1-20.
- 김영태, 김희웅, 정문호(2010),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의 인력관리 인식과 개선 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50(0), 243-262.
- 김준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 요양보호사의 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극동사회복지저널, 4(0), 49-83.
- 남기민(2016),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박명선, 강상목(2010),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전문직종사자의 수요예측 :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국통계학회 논문집, 17(3), 423-440.
- 엄기욱(2011),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10(2), 87-112.
- 윤지성, 허남균, 김삼용, 허희용(2010), 계절형 다변량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국제 항공 여객 및 화물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통계학회 논문집, 17, 473-481.
- 이미자(2008),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2(1), 69-74.
- 장우심(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3, 263-286.
- 장창수(2015), 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실태와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정덕주(2012), 부산지역 고령친화산업의 인력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43(2), 1-19.
- 최미영·최태을·권경주(2016),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4), 221-242.
- 최미영·최태을(2017),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상태 및 자기 유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5(1), 89-107.
- 최인덕, 이상립, 이정면(2010),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및 시설, 인력 추계, 사회보장연구, 26(2), 375-400.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08-2016 각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